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가. 三贊胶(삼찬교)등 5종 식품첨가제 신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

<식품첨가제 신품목 관리방법> 및 <식품첨가제 신품목 신청 및 접수 규정>의 규정에 따라 三贊胶 등 5종 식품첨가제 신품목의 신청은 전문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함. 2018년 12월 26일까지 본 센터에 의견을 제출 요망. 다음이 공고 초안

1. 식품첨가제 신품목

연번	명칭	기능	식품분류번호	식품명칭	최대사용량 (g/kg)	비고
1	三贊胶(삼찬교)	증점제, 안정제 및 응고제	08.03.05	소시지류	5.0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14.02.03	과채주스류 음료	1.4	
			14.03.02	식품단백음료	1.3	

2. 식품첨가제 사용범위 확대

연번	명칭	기능	식품분류번호	식품명칭	최대사용량	비고
1	캐러멜 색(암모니아 공정)	착색제	15.01.07	기타 증류주(테킬라 한함)	1.0g/L	-
2	캐러멜 색(보통)	착색제	15.01.07	기타 증류주(테킬라 한함)	1.0g/L	
3	폴리글리세롤폴리리시놀레이트(PGPR)	유화제	05.04	장식 캔디(모형이나 케이크 장식용), 상단 장식(과일 재료 제외) 및 시럽(초코렛 코팅 한함)	5.0g/kg	

3. 식품공업용 가공보조제 사용범위 확대

연번	명칭	영문명	기능	사용범위
1	프로피온산 및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Propionic acid, sodium propionate, calcium propionate	발효용 영양물질	효소 생산공정, 잔류량≤0.1g/kg

자료원: 국가 식품 안전 리스크 평가 센터

날짜: 2018.12.11

출처: <http://www.cfsa.net.cn/Article/News.aspx?id=4CFD4F7C1E6F081DF66BA78C013BF6BEF1B6BB0934C3687D>

나. GB 28050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의견수렴) 발표

지난 12월 19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 위원회에서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의견수렴)의 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발표함. 2019년 1월 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망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GB 28050-2011과 비교하여 새로이 개정할 표준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영양성분 강제 표기사항 추가
- 열량 및 강제 표기사항의 정기 추가
- 일부 영양소에 대한 표현방법 수정
- 비타민A 및 비타민B 함량에 대한 허용 오차범위 수정
-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예포장식품에 대한 요건 수정
- 일부 영양성분의 영양기준치(NRV) 수정
- 일부 영양라벨 표기형식 세부화
- 일부 영양표기와 영양성분기능표기 수정
- 예포장식품 권장 분량 추가

현행 GB28050 및 수정안 주요 변경 조항 대조표

현행 GB28050	개정안
1. 범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예포장식품에 적용됨" 추가
2. 전문용어 및 정의	핵심 영양성분 정의 삭제
	2.2 열량의 정의 및 계산방법 추가
	2.4 영양성분의 정의 : 식품 중의 영양소 및 기타 유용한 성분
	그 중에 아래와 같은 전문용어의 정의 추가
	2.4.1 단백질
	2.4.2 지방
	2.4.3 지방산
	2.4.4 탄수화물
	2.4.5 당류
	2.4.6 비타민A
3. 기본요구	2.4.7 나트륨
	2.4.8 칼슘
	식품 참고 분량의 정의 추가
3. 기본요구	소수민족 글자의 사용 및 설명 추가
	3.2 예포장식품 영양라벨은 규범적인 한자로 표기해야 함.

	규범적인 문자 외, 동시에 소수민족 문자 또는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 글자의 의미는 한자와 일치해야 하며, 크기는 한자보다 크면 안 됨		
4. 강제 표기사항	강제 표기사항 추가 4.1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비타민A 및 칼슘의 함량 및 그의 영양소 기준치(NRV)의 백분율		
5. 영양성분의 표기 및 표현방법	일부 영양소의 명칭, 단위, 반올림 단위 및 "0"경계치 수정하며, 영양성분의 권고성 측정방법 추가		
	1) 식품의 단백질, 다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유당만),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및 그 단체, 비타민(비타민D, 비타민A 포함), 미네랄(나트륨 제외), 강화한 기타 영양성분의 허용 오차범위 ≥80% 표기치 2) 식품 중의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유당 포함)의 허용 오차범위 ≤120% 표기치		
6.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예포장식품	포장 총 표면적 ≤120cm ² 혹은 최대 표면면적 ≤25cm ² 의 식품		
부록 A 영양소 기준치	항목	GB28050-2011	개정안
	콜레스테롤/mg	≤300	삭제
	엽산/μg DFE	400	350
	콜린/mg	450	500
	비타민D/μg	5	10
	아연/mg	15	11
	요오드/μg	150	120
	셀레늄/μg	50	60
	구리/mg	1.5	0.8
부록 B	권고성 영양라벨 표기방법은 6가지에서 8가지로 변경		

자료원: 식품상무망(食品商務网)

날짜: 2018.12.20

출처: <https://news.21food.cn/34/2836797.html>

1. (품목명) 일반사항

- 없음

2. HS code, 관세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 없음

가. 통관거부사례(2018.11월)

- 한국산 식품 통관문제사례 없음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날짜: 2018.12.24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j/jckspaq/fxyj/2153849/index.html>

나. 中질검총국, 식품·화장품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제조치 발표

지난 12월 26일 발표된 블랙 업체리스트 내에 신규 한국기업 없음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날짜: 2018.12.26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j/jckspaq/fxyj/2156526/index.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j/jckspaq/fxyj/2156532/index.html>